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기금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회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계정구분 및 재원과 용도(안 제2조 ~ 제4조)

나.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5조)

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안 제7조)

-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대상 규정(안 제7조제1항, 제2항)
-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안 제7조제3항)

라. 기금의 존속기한 및 시행규칙(안 제10조 ~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통합기금 운용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발생한 여유 재원 등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

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사업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구미시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따른 구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되 사전에 구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②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다”를 “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③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예치·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④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운용하여야 한다”를 “운용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⑤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예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하여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⑥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⑦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를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⑧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구미시 금고에 예치·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⑨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 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기예치 기금액은 구미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⑩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관리한다”를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⑪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치한다”를 “예치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⑫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탁한다”를 “예탁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⑬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관리할”을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로 한다.

⑭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⑮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⑯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⑰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⑱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⑲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⑳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㉑ 구미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㉒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㉓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㉔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㉕ 구미시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㉖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특별회계 설치)”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과
입 안 자	과 장	박 영 일
	담 당	정 윤 호
	담 당 자	김 보 라 (480-6517)